

계룡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,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) ①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면·동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②지도위원의 수는 면·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③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전출, 주민등록 말소 등 거주요건 흠결, 사직, 사망 등
2.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3.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등 기타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을때

제3조 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2. 한정치산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
제4조 (지도위원의 임무)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.

1.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·장려 및 지원
3.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
4.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
5.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선도·지도 및 정화활동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활동 등

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,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(증표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 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면·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 (필요경비 등 지원) 시장은 협의회 및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(제5조 관련)

(앞 면)	(단위:cm)	(뒷 면)
청소년지도 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○ ○ 면 · 동	0.3 1 4 0.75 0.75 1 0.3	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위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. 년 월 일 ⑥ 계룡시장 (인)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시기 바랍니다.
		0.3 1.7 3.2 5.5

(비고)

1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/m²으로 한다.
2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 - ①사진(4.9cm×4cm)
 -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 - ③성 명
 - ④소속기관명
 - ⑤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
 -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